

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 조치코자 합니다.

아 래

연혁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처분내용	사유
374	조양전설공사	차종훈	성동구 평당동 191-24	영업정지 조개월	국세징수법 제7조. 1항

종위반

제 2 항

수 선 : 성동구 평당동 191-24 조양전설공사 대표 차종훈 귀하

제 목 : 국세 체납 행정 처분 통보

1. 성동부차 22640-4254 (부. 6. 28) 초일 산업 29110-

24767 (부. 7. 5) 초라 관련입니다.

2. 상기 대로의 관련 귀하께서 사업도중 국세를 가려이상
 체납되어 1차 체납 정리기간을 정하여 국세를 납부도록 촉구
 하였으나 이등 이렇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
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 처분 조치 하였기 통보하오니,
 체납된 국세는 조부한 시한내 완납하여 사업도중에 차질 없도록
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제 1 항 "아 래" 사항 이기 행정

제 2 항

수 신 : 서울특별시장 (공보관)	
제 목 : 시보 게재 의뢰	
1. 우리구 관내 제2종 전기 공사업체 (별칭)에 대하여	
청부 공고(안) 내용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	
의 규정에 의거 평면정리 처분 하였기 시보 게재 의뢰 하오니	
채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청부 : 공고안 1부	의 보 관 소 장
제 내 容	
수 신 : 수신처 장	의 보 관 소 장
제 목 : 제2종 전기 공사업 행정 처분 보고 (등본)	
1. 우리구 관내 ^{의뢰} 제2종 전기 공사업체에 대하여 별칭	
공고문과 같이 행정 처분 하였기 보고 (등본) 합니다.	
청부 : 공고문 1부 끝.	
수신처 : 서울특별시장 (연료과장), 서구 1-2/ (선법과장), 서우2마감	
성동세우서감, 한국전기공사협회 등부지부감 끝.	
108	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87호

제2종 전기공사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

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의 위반으로 우리 제2종 전기공사업
연리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전기공사업법 제42조의
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.

영
문
대
조
인

1989. 10

서울특별시청

연리번호	상 호	대표자	소재지	구분내역	처분내용	영업정지기간
274	조양건설공사	차종훈	서울구경로 191-24	국세징수	영업정지 2개월	89. 10.23 ~ 89. 12.23